

공화번호	34
등록일자	2013.12.31.
처리과	7(국무총리비서관)

## 국회기록보존소 직제개편(과 단위 ⇒ 국 단위) 필요성

국회기록보존소가 모든 법정 국회기록물을 관리하고 대내외 기록관리 관련 주요 활동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급 부서로 격상시키고자 함.

### ○ 국회기록물 관리의 중요성

- 국회기록물은 국회 업무 활동의 증거자료이자 중요한 의정사료임.
- 그러나, 현재 공문서의 보존·관리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, 국회활동 관련 시청각기록물, 웹기록 등 법정 관리 기록물이 망실·훼손될 우려가 있음.
- ※ 「대통령 취임사, 629 선언문… 기록이 사라진 나라」 (조선일보, 2013. 11. 21.)

### ○ 법규 개정에 따라 신규·확대된 기록관리 업무 추진 필요

연번	직제 개정 후 신규·확대 업무	비고
1	국회활동 관련 시청각기록물 이관·DB 구축	신규
2	소속기관 기록관리 지도·감독 등	
3	보존기록물 정리·기술 및 열람 서비스	
4	콘텐츠 개발 및 대국민 서비스용 포털 구축	
5	웹기록 등 각종 전자기록물 수집·관리	
6	의장단 및 주요 인사 구술기록 생산	
7	기록물 공개여부 분류	확대

### ○ 입법부 대표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필요

- 행정부 기록물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(1급)과 대응할 수 있는 입법부 영구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가 필요함.
- ※ 국가기록원(1급): 3부 3관 17과 1센터(336인) vs. 국회기록보존소: 1소(과)→1소(국) 2과(26인)
- ICA, EASTICA 총회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.

### ○ 적극적인 대국민 서비스 강화로 ‘열린 국회’ 실현

- 세계적인 추세인 ‘열린 정부’ 기조에 맞추어 국회기록물을 공개 및 서비스 함으로써 국민의 ‘알 권리’를 보장하고 ‘열린 국회’의 기반을 마련함.